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박호정*, 임 희**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박사**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State

Ho Jung Park*, Hee Lim**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duk College*, Doctor of Laws**

요 약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피해자권리, 의견진술, 형사절차, 피해영향진술.

Abstract It was just over 20 years ago that the victim who had been seen as the forgotten man i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a long time started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state his opinion.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Japan provide crime victims with the opportunity to state freely about facts of damage as well as their opinions in criminal proceedings at present. However, Korea gives the victim the right of statement as a witness, though the statement of crime victim's opinion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at is, as crime victims are not free from perjury they cannot actively state their views. Meanwhile, if the freedom of crime victims' statement is guaranteed in law and victims can state opinions with their own voice, victims' statement of opinion will help the victims treat and relieve their psychological damages. For these reasons, it is desirable that Korea, like the U.S. and Japan, gives crime victims the right to state their opinion without fear of perjury in criminal proceedings not as witnesses but as the aggrieved party.

Key Words : Crime victims, Victims' right, the Statement of opinions, Criminal Procedure, Victims Impact Statement.

Received 15 July 2013, Revised 10 August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o Jung Park(Daeduk College)

Email: phj1041@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였고, 주변인에 불과했으며,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이념 하에 증거획득의 방법으로 전락되어 심리의 객체에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임으로써 형사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주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세계 여러 나라는 서둘러 피해자의 보호 및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제한된 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는 단지 피해자가 증인의 신분으로 진술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로서 위증의 부담 없이 가해자에 대한 태도, 심정,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감정을 치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감정을 완화시키고 치유하는 역할 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상처를 직접 들음으로써 그의 범행을 누우칠 기회를 갖게 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1] 또한,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양형관련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검사나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진술할 경우 양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양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예방하고 막지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의 치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아닌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들을 살펴어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피해자 진술권의 내용

2.1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내용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한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담겨 있다. 본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의 정도, 피해의 결과,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 근거하여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권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하였다.[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헌법적 권리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법정진술권의 신청자를 피해자 이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294조의2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피해의 정도, 피해의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권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의 권리이므로[3]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미국과 일본의 피해자 진술제도

2.2.1 미국

과거, 피해자는 미국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잊혀진 존재였고, 최악의 경우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아갔던 그는 2차 피해를 당하는 존재에 그쳤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

는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반면, 사건의 당사자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배제시킨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1970년대 피해자 권리운동이 번져나갔다. 그 결과, 미국 각 주는 주헌법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4] 한 예로써, 1990년에 애리조나 주가 채택한 헌법수정으로서 피해자 권리장전(the Victims' Bill of Rights)은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다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협박, 괴롭힘, 또는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됨을 선언하였다.[5] 또한 피해자는 피고가 참여할 권리를 갖는 모든 형사절차에 대해 알 권리와 절차에 참여할 권리(Ariz. R. Crim. P. 39(a)(2), (b)(4))가 있음도 명백히 하였다.[6] 즉, 모든 범죄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이 범죄로부터 겪은 고통을 치유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 권리장전은 보장하고 있다(Ariz. Const. art. 2, §2.1(A)(1); 1991 Ariz. Sess. Laws, ch. 229, §2(2)).

한편, 뉴저지 대법원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즉, 검사는 피해자를 대신해 소추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권리는 검사와는 독립된 것이다.[7] 따라서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직접 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았다.[8]

살피본 바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된 피해자의 진술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입은 객관적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VIS(Victims Impact Statement)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주관적 의견을 진술하는 VSO(Victims Statement of Opinion)다.

VIS는 피해자가 범죄에 의해 받게 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범죄로부터 받은 영향, 자신과 가족의 상황 등을 구두나 서면에 의해 행해지는 제도이다.[9] 그러나 VIS와 VSO를 통칭하여 VIS로 부르기도 한다.[10]

1980년대 후반,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피해결과를 진술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11] 1987년, Booth 사건에서 배심원은 피고의 범죄경력, 범죄의 구체적 상황 등을 고

려하여 사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임무가 있는데 반해 피해자의 영향진술은 배심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로부터 멀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은 해석하였고, 그러한 메릴랜드(Maryland) 주대법원의 견해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지지되었다. Booth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은 Payne 사건에서 뒤집히게 된다.[12] 1991년, 연방대법원은 2세의 여아와 그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Payne 재판에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8조가 VIS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피해자의 가족(살해된 여아의 할머니)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Payne 판결에서 대법원은 VIS가 양형과정, 특히 사형재판에서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13]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지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행위로부터 입게 된 피해로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는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미국은 피해자에게 객관적 피해사실의 진술과 주관적 의견의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2.2 일본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에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희망할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심정 및 그 외의 피해사건에 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92조의2 제2항).

제29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재판장, 배석재판관, 또는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해당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피해자 진술제도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그의 심정이나 의견은 대개 양형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지만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질문을 인정하고 있다. 단, 제292조의2 제9항에 의거하여 법원은 피해

자의 의견진술이나 서면을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주관적 심정 또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신빙성을 다룰 필요도 없는 것이다.[14]

이와 같이 일본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범죄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증인의 입장이 아닌 특별한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제도를 두고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에게 법적 권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다만 피해자 본인의 생각을 공판에서 주체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장소설정이 주된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15] 그러나 일본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분명 피해자가 위증의 염려 없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에 따른 심정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진술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피해자의 치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피해자 진술권리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3.1 피해자 의견진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법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 결과 및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양형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 및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먼저, 피해자가 양형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모든 물질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양형 및 가해자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16]

그 동안 양형심리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판사 또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의 논거를 청취하여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검사와 피해자가 판단하는 피해정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사안이 공익

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배제할 수 있다.[17]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양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양형결과의 개선과 더욱 효율적인 양형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18]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양형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찬성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양형에 대한 일반인과 법관의 인식차이를 들 수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인이 요구하는 형량은 법관의 선고형량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19]

더욱이 일반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친족관계 및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유기형량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인이 양형전문가인 법관과 달리 범죄자들에 대해 보다 강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형결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법감정이 상당한 수준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판사나 검사가 판단하는 범죄피해와 피해당사자가 느끼는 피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양형관련 피해자 의견진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양형단계에서 직접 피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범죄의 영향에 대한 청문과는 전혀 다른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0]

다음으로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양형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사회가 양형권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양형권자가 심사숙고하여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21]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양형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보복감정에 휩싸여 징벌에만 치우친 나머지 감형에 대한 사정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양형보다는 중한 양형만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또한, 양형 판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 여부에 따라 양형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양형 판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특정 피해자에게 야기된 특수한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행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형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23]

살피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양형관련 내용이 포함 되는가 또는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절차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은 단지 규정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형결과의 개선, 피해자의 치유 그리고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형사사법기관의 변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효율성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24]

특히, 피해자의 영향진술은 피해자의 음성을 통해 직접 피해 진술을 들은 범죄자가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서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Harry's victim)는 두려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구두 진술을 행하였고, 이를 직접 청취한 범죄자(Harry)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범행을 깨닫고 뉘우쳤다. 이러한 피해 진술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영향진술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5] 사례에서 처럼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심정의 변화가 범죄자의 상습화를 막고, 피해자의 수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6]

다만, 피해자의 양형관련 진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거나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27]

3.2 피해자 의견진술의 개선방안

우선적으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인신문절차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증인신문방식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방식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의 형태로 진술하는 경우 위증처벌 등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28] 일본의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의견진술권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고, 피해당사자 자격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증처벌 등의 위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

피해자의 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의 증인신문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진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절차에서 당연히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을 행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30] 다시 말해, 피해자는 증인자격이 아닌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독자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견진술제도는 신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수동적인 형식을 벗어나 능동적인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31]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진술의 시기는 증거조사절차가 종료하고 법원이 심증을 형성한 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피고인의 변론과 재판상의 심리절차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피해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32]

피해자의 의견진술의 필요성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33] 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의 회복과 고통의 치유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미한다.[34]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진실발견이나 소송경제의 이유로 제한한다면 결국 피해자의 자기 치유적 진술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술의 치료적 효과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때 나타난다는 점[35]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신문자의 인식관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open-ended questions)[36]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진술의 치유적 효과를 고려하여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37]가 있으나 진술의 중복이나 소송지연 혹은 중형만을 의도한 악의의 진술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적절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진술을 회망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대표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두진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두진술은 피해자와 판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로 인해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렵거나 법정에서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느낄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을 허용하고, 법원이 공판시 그 서면을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자 진술권의 보장이 될 것이다.[38]

4. 결론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와 의견 등을 구두나 서면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적 규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증인신문을 통해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피해자가 위증의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적극적·능동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증인신문과 별도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양형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사법부와 검사의 판단은 피해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사법부가 내린 형량은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는 격차가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막지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끝으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비극적 범죄에 의해 파

괴된 피해자들의 심신을 치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의견진술제도는 끔찍한 범죄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출구가 되어 줄 것이며, 오랫동안 부인되어 온 피해자의 참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Seok-Ku Kang, Kwang-Min Park, Zae-Hee Kim, Uplift planning of the role of victims in sentencing,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63, 2009
- [2]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1989.4.17. 88 Hun-Ma 3 Decision.
- [3] Sang-Sik Park, A Study of Victim Impact Statement, Victimology study Vol. 14.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76, 2006. 4.
- [4] Paul G. Cassell, Recognizing Victims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oposed Amendments in Light of the Crime Victims Act,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p.6 2005; William F. McDonald, Towards a Bicentennial Revolution in Criminal Justice: The Return of the Victim, 13 Am. Crim. L. Rev., pp.649-650, 1976.
- [5] Ariz. Const. art. 2, §2.1(A)(3); Paul G. Cassell, Recognizing Victims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oposed Amendments in Light of the Crime Victims Act,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p.6, 2005.
- [6] Ariz. R. Crim. P. 39(a)(2), 39(b)(4) (Cite as: 226 Ariz. 510, 250 P. 3d 1139).
- [7] State v. Ruffin, 371 N. J. Super. 371,387 (App. Div. 2004).
- [8] State v. Faunce, 244 N. J. Super. 499, 582 A. 2d 1268 (1990).
- [9] Jin-Kuk Lee, The legislative agendas for participation of victim in the trial , Criminal policy study, Vol. 21. No 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228, 2010. winter.

- [10] Ji-sun Kim, A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11-36, 2008; Sang-Sik Park, A Study of Victim Impact Statement, Victimology study Vol. 14.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89, 2006.4.
- [11] Booth v. Maryland, 482 U.S. 496 (1987); Carolina v. Gathers, 490 U.S. 805 (1989); Yeong-seong Min, A Critical Examination on Victim Statement of Opinion, Justice Vol. 93, pp.169-170, 2006.8.
- [12]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34 (1991).
- [13] Ji-sun Kim, A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83, 2008.
- [14] Dong-Ju Lee,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p.91, 2007.
- [15] Machuohiroya(redaction), The Commentation of Provisions: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Two Acts, Yumoongak, p.102, 2001.
- [16] Edna Erez, Victim Voice Statements and Sentencing : Integrating Restorative Justice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Principles in Adversarial Proceedings, 40 No.5 Crim. Law Bulletin 3, p.2, 2004.
- [17] Ji-sun Kim, A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6, 2008.
- [18] Ji-sun Kim, A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6, 2008.
- [19] Chang-han Lee, Public and Judge Perception of Crime Seriousness of Sexual Offen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34,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pp.291-293, 2006.
- [20] Ji-sun Kim, A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3-56, 2008.
- [21] Yeong-seong Min, A Critical Examination on Victim Statement of Opinion, Justice Vol. 93, p.172, 2006.8.
- [22] Kwang-Min Park, Crime Victim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The Reality of Victims' Damage and Policies of Protection·Assistance」(1st Criminal Justice Forum Sourcebook),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0, 2010.
- [23] Ji-sun Kim, A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15, 2008.
- [24] Kwang-Min Park, Crime Victim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The Reality of Victims' Damage and Policies of Protection·Assistance」(1st Criminal Justice Forum Sourcebook),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1, 2010.
- [25] Michelle L. Meloy & Susan L. Miller, The Victimization of Women, (Law, Policies,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111, 2011.
- [26] Michelle L. Meloy & Susan L. Miller, The Victimization of Women, (Law, Policies,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110, 2011.
- [27] Kwang-Min Park, Crime Victim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The Reality of Victims' Damage and Policies of Protection·Assistance」(1st Criminal Justice Forum Sourcebook),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1, 2010.
- [28] Kim, Bong-Su, The Criminal Victim's Right Protection in the New Criminal Trial, Victimology study Vol. 16.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287, 2008.
- [29] Park, Sang-Sik,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gendas, Victimology study Vol. 16.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135, 2008.
- [30] Kwang-Min Park, Crime Victim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The Reality of Victims' Damage and Policies of Protection·Assistance」(1st Criminal Justice Forum Sourcebook),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3, 2010; Kim,

- Bong-Su, The Criminal Victim's Right Protection in the New Criminal Trial, *Victimology study* Vol. 16.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287, 2008.
- [31] Seung-ho Lee, A Study on the Victim's Right to Make Statements in Court, *Victimology study* Vol. 17.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77, 2009.
- [32] Kwang-Min Park, Crime Victim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The Reality of Victims' Damage and Policies of Protection·Assistance」 (1st Criminal Justice Forum Sourcebook),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4, 2010.
- [33] Sang-don Yi, The Three Layers of Criminal Justice and the Status of Criminal Victim, *Victimology study* Vol. 17.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50, 2009.
- [34] Sang-don Yi, The Three Layers of Criminal Justice and the Status of Criminal Victim, *Victimology study* Vol. 17.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49, 2009.
- [35] James W. Pennebaker,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An Overview", in James W.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3-10, 1995.
- [36] Nathalie Des Rosiers/Bruce Feldthusen/Oleana A.R. Hankivsky, "Legal Compensation for Sexual Violence: Therapeutic Consequences and Consequences for the Judicial System",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4, p.438, June, 1998.
- [37] Sang-don Yi, The Three Layers of Criminal Justice and the Status of Criminal Victim, *Victimology study* Vol. 17. No. 1,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p.50, 2009.
- [38] Kwang-Min Park, Crime Victim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The Reality of Victims' Damage and Policies of Protection·Assistance」 (1st Criminal Justice Forum Sourcebook),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55, 2010.

박 호 정



- 1990년 3월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4년 8월 : 충남대학교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2010년 8월~현재 :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범죄, 수사
 · E-Mail : phj1041@hanmail.net

임 희



- 2011년 8월~2012년 7월 :오하이오 주립대로스쿨 방문연구원
- 2010년 8월 : 충남대학교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관심분야 : 성범죄, 형사정책
- E-Mail : hlcj99@hanmail.net